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6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에 따라 '26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위와 관련, 주요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대상: '26.2.28. 기준 개설·운영 중인 **병·의원급 의료기관**
 ※ '26.2. 의료기관 사전 안내문 발송 완료, '26.3. 중 대상기관 통지문 등기 발송 예정
 - 나. 내용: '26년 3월 비급여 진료내역 1,411개 항목 및 비급여 가격 공개 자료 753개 항목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별표1] 보고항목, [별표2] 보고범위 및 세부내역
 - 다. 제출기간: '26.4.13.(월) ~ 6.12.(금) ... 9주, 종별 제출 권고기간 운영

■ 종별 제출 권고기간 ■

보고기간	대상기관
'26. 4. 13.(월) ~ 5. 10.(일)	의원
'26. 5. 11.(월) ~ 5. 24.(일)	치과의원
'26. 5. 25.(월) ~ 6. 7.(일)	한의원, 병원급 이상
'26. 6. 8.(월) ~ 6. 12.(금)	공통

※ 종별 제출 권고기간 외(전체 보고자료 제출기간 내)에도 자료 제출 가능

- 라. 제출처: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 비급여보고
- 마.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비급여관리실 ☎033-736-2040
- 바. 참고자료: 요양기관정보마당 ▶ 공지사항 ▶ 2026년 상반기 비급여보고제도 관련 자료 게시

4. 아울러,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한 경우 「의료법」 제9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기간 내 제출하시어 법률 의무 미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6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안내문 1부. 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수신자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대한치과 의사협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

과장

심혜미

팀장

정소영

부장

전결

2/27

한유영

협조자

시행 비급여조사부(TF)-103 (2026.2.27.) 접수 ()
우 2646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77, 3층 (반곡동) / <http://www.nhis.or.kr>
전화 033-736-2076 전승 033-749-9684 / haemis9016@nhis.or.kr / 공개